

## 2025년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모집 안내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항만시장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한국항만협회장

### 1. 신청 대상자

- ☐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 2. 대상사업

- ☐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항만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 등 항만법 제2조5호의 항만시설에 대한 해외사업

\* 해외항만인프라 개발 관련 EPC, 투자개발형, PPP, 설계, 감리, 등 건설관련 모든 공종

### 3. 지원내용

- ☐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엔지니어링사 등을 통한 해외항만개발 타당성 조사(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계약액 기준, 공급가액)만 인정

\*\* 신청기업 자체 활동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인정불가

□ (지원규모) 1건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되, 선정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3.5억원까지 지원가능

\* ① 국내 공기업이 참여한 K-컨소시엄 구성이 확정적인 사업, ②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 사업, ③ 사업수주에 우선권을 확보한 사업, ④ 최소수익보장이 있는 사업, ⑤ 수소항만 및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

##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4.21(월) ~ 2025.5.22(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 ① | 신청서 1부                      |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 별지 1 |
| ② | 사업제안서 12부(컨설팅비용 산출 견적서 포함)  | 서류(제본본), 전자파일 함께 제출 | 별지 2 |
| ③ | 용역사업 과업지시서(견적요청서) 및 견적서(복수) |                     |      |
| ④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      |
| 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⑥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                     |      |
| ⑦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
| ⑧ |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항만협회 경영지원실

○ 주소 : (072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707호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 공문 접수 必

## 5. 선정 기준 및 방법

### □ 선정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중에서 고득점 순서 및 절대평가로 선정(예산 한도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이 선정되며, 그로 인해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되며, 1순위 기업의 사업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대상기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심의없이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70점) | 합계 (100점)            |
|-----------------------------|-----------|----------------------|
| 상대국가 현황,<br>우리기업 역량, 사업지표 등 | 사업타당성     | 60점 이상<br>고득점 순서로 선정 |

###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신청기업 개별공지
- 신청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제안내용 및 관련사항 전반에 걸친 평가 후 사업선정
- \* 신청기업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20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7일 이내 개별 통지

## 6.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양식은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 및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및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이 책임짐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02-2165-0131, 0136)로 문의 가능

붙임 1. [별지1호]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별지2호] 사업제안서(양식). 1부.  
3. [별지3호]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끝.